

청주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513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피고와 B(C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별 체결한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4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와 사이에 2014. 7. 10. 및 2014. 8. 28. B이 F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될 각 대출금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B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다 2017. 2. 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7. 2. 23.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22,275,495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731,600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가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전90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15. "B은 원고에게 121,544,095원 및 그 중 121,543,8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이 운영하던 D회사과 E회사는 2016. 12. 31.자로, B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G은 2017. 1. 15.자로 폐업신고 되었다. B의 아들인 피고는 2019. 12. 30. 'H'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0. 10. 16.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I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마. 2019. 9. 30.부터 2019. 12. 9.까지 사이에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 일자에 각 해당 금액이 이체되었다(이하 이체된 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이체'라 한다).

바. 원고는 I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967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B이 'D회사'과 'E회사'을 고의 폐업한 후 아들인 피고를 대표자로 한 I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였으므로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I 회사도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I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없어 피고가 자금을 차용하여 I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여야 했다. B이 제3자(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송에서 I 회사가 배후에 있는 B의 개인기업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하였으나, 그 판결에서 "B이 운영한 업체들의 자산 등(식품인증과 담당 직원의 고용관계, 사업장 등)이 H와 I 회사에 이전되었고, 이 사건 이체금이 I 회사의 공장 신축자금이나 피고가 운영하는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권리

앞서 인정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 B와 수익자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1) 증여 여부

가) 이 사건 이체와 관련하여, 원고는 B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차용한 돈 내지는 김치대금 선급금을 B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과 그 인정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이후 아들인 피고가 그 자산을 승계한 새로운 업체와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이체금이 피고가 설립한 업체와 법인의 공장 신축자금 내지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피고가 제3자에게 직접 차용한 돈과 거래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지만, 수개월 동안 금전의 차용, 이후 이자 내지 원금을 변제한 금융내역, 거래처와의 납품과 정산 관련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체가 B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인정사실과 총주시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이체 전 기존 업체를 폐업한 상태로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앞서 인정한 구상금 채무 등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체가 B의 변제 자력을 더욱 악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이체를 통한 B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 46,446,8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